

위기정보 발령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위기정보 구분	발령기준
관심	특정 품목의 교역규모, 국제 분업구조,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 발생으로 관련 산업 전반의 공급망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 발생으로 해당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련 산업 전반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